

제175회 거창군의회

<임 시 회>

조 례 안 상 정

(조 례 2건)

거 창 군

--- 목 차 ---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11 ~ 35	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2011 ~ 36	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3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1 ~ 3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1. 5. 31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○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과 모전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, ‘시설관리사업소’ 신설에 따른 본청 실·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이관하여 신설하는 등 조직 정비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부서의 명칭을 변경함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).

○ 주민생활지원과(장) ⇒ 주민생활지원실(장)

나. 실·과장의 사무분장을 조정함

(안 제3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8호다목·라목 삭제).

○ 주민생활지원과장

- 사무이관 :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○ 문화관광과장

- 사무이관 :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스포츠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‘시설관리사업소’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와 위치, 소장의 역할 및 그 소관 사무의 대강을 정함(안 제4절(제20조부터 제22조까지) 신설).

○ 설치근거 :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

○ 위 치 :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

○ 소관사무 :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, 스포츠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,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라.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함(안 별표).

○ 현행 : 모전 보건진료소(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-3번지)

○ 변경 : 모동 보건진료소(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87-2번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제114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7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3조, 제20조

나. 예산조치 : 연간 추가소요액 46,813,370원(기구 및 정원조정)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11. 5. 27. ~ 6. 7.) 결과 : 1건 접수(반영 1건)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■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○ 입법예고기간 : 2011. 5. 27 ~ 2011. 6. 7

의견제출자	제출의견	검토결과	반영여부
문화관광 과장	<p>○ 일반체육 업무와 체육 시설 업무는 동일 부서내 있어야 효율적이며 업무 혼선이 없음</p> <p>○ 체육진흥과 스포츠 마케팅 업무는 분리할 수 없음</p>	<p>○ 일반체육 업무와 스포츠 마케팅, 체육시설 관리 업무 등 연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진흥 업무를 시설 관리사업소로 이관</p> <p>- 문화관광과 ⇒ 시설관리 사업소</p> <p>·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p>	반영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주민생활지원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8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.

제4장에 제4절(제20조부터 제22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절 시설관리사업소

제20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.

② 시설관리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에 둔다.

제21조(소장)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2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,
2. 스포츠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8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11조제1항, 제14조제1항,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·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(의한)”을 각각 “에 따라(따른)”으로 한다.

별표의 명칭란 중 “모전 보건진료소”를 “모동 보건진료소”로 하고, 위치란 중 “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-3번지”를 “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87-2번지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주민생활지원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“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을 “거창사건관리사업소,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②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주민생활지원실”로 한다.

③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④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⑤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⑥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⑦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⑧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⑨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담당과장”을 “담당실장”으로 한다.

⑩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⑪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⑫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⑬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⑭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- ⑮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- ⑯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4항 본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- ⑰ 거창군 사무의 읍·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주민생활지원실”로 한다.
- ⑱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시설관리사업소장”으로, “스포츠레저담당주사”를 “스포츠마케팅 담당주사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장 군 본청	제2장 군 본청
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군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<u>주민생활지원과</u>, 행정과, 창조정책과, 재무과, 민원봉사과, 경제과, 문화관광과, 산림녹지과, 녹색환경과, 건설교통과, 도시건축과, 재난관리과를 둔다.</p> <p>② (본문 생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주민생활지원과장</u> 가. ~ 다. (생 략)</p> <p><u>라.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마.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바.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사. 장애인,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사항</u></p> <p>3. ~ 7. (생 략)</p> <p>8. 문화관광과장 가. ~ 나. (생 략)</p> <p><u>다.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라. 스포츠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마. 수승대관광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바. 박물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~ 13. (생 략)</p>	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----- ----- <u>주민생활지원실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본문 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주민생활지원실장</u>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u>라.</u> (현행 마목과 같음)</p> <p><u>마.</u> (현행 바목과 같음)</p> <p><u>바.</u> (현행 사목과 같음)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u>다.</u> (현행 마목과 같음)</p> <p><u>라.</u> (현행 바목과 같음)</p> <p>9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제3장 직속기관	제3장 직속기관
제2절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	제2절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
제8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·제8조·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·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,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	제8조(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에 따라----- -----.
②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.	② ----- -----에 따라 ----- -----.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	③ ----- -----에 따라 ----- -----.
제4장 사업소	제4장 사업소
제1절 상하수도사업소	제1절 상하수도사업소
제11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.	제11조(설치) ① -----에 따라 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절 교육문화센터	제2절 교육문화센터
제14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문화예술활동 등에 관한 편의와 서비스제공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문화센터를 둔다.	제14조(설치) ① -----에 따라 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절 거창사건관리사업소	제3절 거창사건관리사업소
제17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둔다.	제17조(설치) ① -----에 따라 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신 설>	제4절 시설관리사업소												
<신 설>	제20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.												
<신 설>	② 시설관리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에 둔다.												
<신 설>	제21조(소장)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												
<신 설>	제22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 1.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2. 스포츠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3.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												
제5장 읍·면	제5장 읍·면												
제23조(설치) ① 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·면을 둔다.	제23조(설치) ① -----에 따라-----.												
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·면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	② -----에 따른 -----.												
[별표]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8조 관련)	[별표]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8조 관련)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위치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관할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모전 보건진료소</td> <td>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-3번지</td> <td>모전, 석동, 원당, 무월, 당산, 황산1·2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칭	위치	관할구역	모전 보건진료소	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-3번지	모전, 석동, 원당, 무월, 당산, 황산1·2구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위치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관할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모동 보건진료소</td> <td>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87-2번지</td> <td>----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칭	위치	관할구역	모동 보건진료소	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87-2번지	-----
명칭	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
모전 보건진료소	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-3번지	모전, 석동, 원당, 무월, 당산, 황산1·2구											
명칭	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
모동 보건진료소	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87-2번지	-----											

[별표]

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8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거창군 보건소	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1번지	거창군 일원
주상면 보건지소	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1번지	주상면 일원
웅양면 보건지소	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246-1번지	웅양면 일원
고제면 보건지소	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754-1번지	고제면 일원
북상면 보건지소	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33-4번지	북상면 일원
위천면 보건지소	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03-3번지	위천면 일원
마리면 보건지소	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47-4번지	마리면 일원
남상면 보건지소	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1-4번지	남상면 일원
남하면 보건지소	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91-1번지	남하면 일원
신원면 보건지소	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87-5번지	신원면 일원
가조면 보건지소	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42-8번지	가조면 일원
가북면 보건지소	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887-3번지	가북면 일원
거기 보건진료소	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870-10번지	거기, 장포, 고대, 원남산, 포덕동, 보광, 송희
강천 보건진료소	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87-36번지	산포, 우량, 석정, 강천, 금광, 어인, 용전, 군암, 노현
하성 보건진료소	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78-2번지	송산, 아주, 한기, 신촌, 왕암, 오산, 장지
봉산 보건진료소	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587-13번지	탑선, 원기, 원봉계, 와룡, 용초, 구송, 둔기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개명 보건진료소	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621-9번지	개명 1,2구, 수내, 손항, 온곡, 학림, 원궁항, 산양
소정 보건진료소	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239-6번지	중산, 소정, 개삼, 탑불
월성 보건진료소	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3-2번지	산수, 월성, 내계, 황점, 병곡
모동 보건진료소	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87-2번지	모전, 석동, 원당, 무월, 당산, 황산 1,2구
고학 보건진료소	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13번지	병항, 고신, 고대, 상촌, 신기, 시목, 엄대, 서편, 동편
율리 보건진료소	거창군 마리면 율리 161-5번지	풍계, 상율, 월화, 영신, 학동, 성락
임불 보건진료소	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983-1번지	임불, 남불, 월포, 천척, 고척, 한산
진목 보건진료소	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155번지	춘진, 진목, 남진, 동령, 신기, 둔동, 외등
지산 보건진료소	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5-4번지	자하, 신기, 장진, 천동, 대사, 오가, 대야, 가천, 용동, 월곡
대현 보건진료소	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70번지	내외탐, 소야, 대현, 비곡, 중유, 예동
양지 보건진료소	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828-8번지	원동, 양지, 수옥, 저전, 감악, 구사, 신기, 수다
도리 보건진료소	거창군 가조면 도리 1221번지	대학동, 화곡, 도산당, 녹동, 부산
용암 보건진료소	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885-1번지	몽석, 내촌, 송정, 용암, 개금, 공수, 박암, 옥산
중촌 보건진료소	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72-1번지	심방, 회남, 중촌, 추동, 해평, 용산, 율리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1 ~ 3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1. 5. 31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-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비율을 조정하고,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2).

- 5급 : 6.2% 이내(현행) ⇒ 6.4% 이내(조정 : 증 0.2%)
- 9급 : 8.6% 이상(현행) ⇒ 8.4% 이상(조정 : 감 0.2%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.

- 일반직 5급 정원 : 증 1명
 - 현행 : 30명(본청11명, 의회3명, 직속기관1명, 사업소3명, 읍1명, 면11명)
 - 조정 : 31명(본청11명, 의회3명, 직속기관1명, 사업소4명, 읍1명, 면11명)
-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: 감 1명
 - 현행 : 476명(본청221명, 의회5명, 직속기관63명, 사업소27명, 읍32명, 면128명)
 - 조정 : 475명(본청214명, 의회5명, 직속기관62명, 사업소34명, 읍32명, 면128명)
- 기능직 정원 : 증감없음
 - 현행 : 76명(본청43명, 의회6명, 직속기관5명, 사업소11명, 읍4명, 면7명)
 - 조정 : 76명(본청38명, 의회6명, 직속기관6명, 사업소15명, 읍4명, 면7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, 제24조, 제29조, 제30조, 제38조

나. 예산조치 : 연간 추가소요액 46,813,370원(기구 및 정원조정)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지 별표로 같음
- (2) 입법예고(2011. 5. 27. ~ 6. 7.) 결과 : 1건 접수(반영 1건)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■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○ 입법예고기간 : 2011. 5. 27 ~ 2011. 6. 7

의견제출자	제출의견	검토결과	반영여부
문화관광 과장	<p>○ 일반체육 업무와 체육 시설업무는 동일부서 내 있어야 효율적임</p> <p>○ 체육진흥과 스포츠 마케팅은 연계업무로 분리하기 어려움</p>	<p>○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 조정</p> <p>- 당초 : 본청 282명 사업소 42명</p> <p>- 변경 : 본청 270명 사업소 54명</p>	반영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1.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율	1% 이내	<u>6.4% 이내</u>	28.2% 이내	31% 이내	25% 이내	<u>8.4% 이상</u>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4급 이상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5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6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7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8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9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.2%</u>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8.2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1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.6%</u>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율	1% 이내	<u>6.2%</u> 이내	28.2% 이내	31% 이내	25% 이내	<u>8.6%</u> 이상	<p>[별표 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4급 이상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5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6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7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8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9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.4%</u>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8.2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1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.4%</u>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율	1% 이내	<u>6.4%</u> 이내	28.2% 이내	31% 이내	25% 이내	<u>8.4%</u> 이상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1% 이내	<u>6.2%</u> 이내	28.2% 이내	31% 이내	25% 이내	<u>8.6%</u>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1% 이내	<u>6.4%</u> 이내	28.2% 이내	31% 이내	25% 이내	<u>8.4%</u>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
<p>비고 :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2. 기능직공무원 (생 략)</p> <p>3. 연구직 · 지도직공무원 (생 략)</p> <p>4. 별정직공무원 (생 략)</p>	<p>비고 :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2. 기능직공무원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연구직 · 지도직공무원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별정직공무원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표 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% 이내	<u>6.4% 이내</u>	28.2% 이내	31% 이내	25% 이내	<u>8.4% 이상</u>

비고 :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기능직공무원

구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비 율	9% 이내	21% 이내	24% 이내	31% 이내	15% 이상

비고 :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8% 이내	92% 이내

비고 :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	70% 이내	30% 이상		

비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
					소계	기술센터	보건소			
총 계		645	270 (282)	14	124	60	64	54 (42)	37	146
정무직		1	1							
일반직	소계	510	228 (235)	8	64 (65)	16 (17)	48	38 (30)	33	139
	4급	1	1							
	4~5급	3	2		1		1			
	5급	31 (30)	11	3	1		1	4 (3)	1	11
	6급 이하	475 (476)	214 (221)	5	62 (63)	16 (17)	46	34 (27)	32	128
일반직 + 지도직	소계	19			19	19				
	5급 상당	4			4	4				
	6급 상당	15			15	15				
일반직+ 연구직 (6급 상당 이하)		2	2							
별정직 (6급 상당 이하)		16	1		15		15			
연구직 (연구사)		4			3	3		1		
지도직 (지도사)		17			17	17				
기능직		76	38 (43)	6	6 (5)	5 (4)	1	15 (11)	4	7